

시민 127-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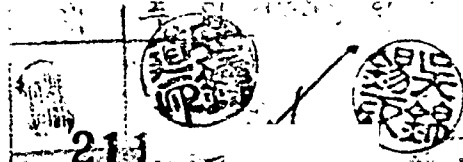
77. 12. 22

수신 수신처 상호 산업대학
기록 전부 공문서규정 준수 지시

1. 정부 공문서규정 제26조(결재) 제7항에 의하면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동 제27조(전결, 대결, 후결) 제3항에 의하면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수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음"라고 규정되어 있음
3. 또한 대결은 관공서규정의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4. 각급 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아니하고 대결권이 없는 보조기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5. 앞으로 위와같은 기안문서는 문서통제가 불가할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문책하겠으며
6. 각급 기관의 문서통제관은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 준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안문서의 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
7. 관계규정

- 가. 정부공문서 규정(대통령령 제413호)
-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규정(대통령령 제8568호)

8568호)



시련 127-1464

다. 서울특별시역 구직제(대통령령제8329호)

라. 서울특별시근로자배치규칙(원제1666호)

첨부 각주 배타연환 시보. 끝.

7 12. 23

13. 30

2632

49세

서울특별시청

수신처 서관 3, 시과 1-1, 직할 1-6, 서구 1-12,

서출 1-2, 서사 1-69, 서국 7

직 우 비 탁 현 황

구 분	우 코	대 비	근 거
본청	시 장	1부시장	규칙 제3조 1항 전단
	시장및부시장	2부시장	동상 후단
	1부시장	2부시장	규정 제3조 2항
	2부시장	1부시장	동상
	1.2부시장	기획관리관 (기획순위 국장)	규칙 제3조 2항 1호
	국 장 (관)	주무과장 (국장순위)	규칙 제3조 2항 2, 3호
		담 당 관 (담당관및부국)	동상 후단
	실. 과장	주무계장 (규칙순위)	규칙 제3조 2항 4호
	계 장	계원중상위직	규칙 제3조 2항 5호
	구청	구청장	상위순위국장
출장소	소장	상위순위과장	규칙 제2조 1항 1호
사업소	소장	담 당 관 부 장	규칙 제3조 1항 2호
		상위순위과장	"
		상위순위계장	"
		상위직원	"

(참 고)

1. 구청, 출장소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

우고 기는 직능대리규칙 제3조 2항의 준환

2. 지정대리

- 법령 대리가 있는 경우 -

가. 기관장 유보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거
식각을 지킨

나. 보조기관 유보시 소속 기관장이 직급 및
직류순위에 의거 지킨

근 거 방 령

=====

1.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568호 1977. 5. 11)

서울특별시의 구직제(대통령령 제8229호
1976. 12. 29)

2. 조례(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설치조례(조례제1103호
1976. 12. 21)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설치조례(조례제1117호
1976. 12. 21)

3.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원장 규칙(규칙 제1623호
1976. 1. 31)

서울특별시 직무대리 규칙(규정제1666호
1977. 1. 28)